

IFRS in Focus

IFRIC, 노천광산의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폐석제거원가의 회계처리에 대한 해석서 초안 발표

목차

- 제안사항
- 자산의 정의
- 제거활동의 인식
- 제거활동의 측정
- 경과규정
- 시행일

요점

- 생산단계에서 발생한 제거활동(stripping campaign) 원가는 기존 자산의 구성요소로 자본화되지만 일상적인 제거원가는 당기비용으로 처리될 것이다.
- 제거활동요소(stripping campaign component)는 관련된 기존 자산의 성격에 따라 분류될 것이다
- 제거활동원가(stripping campaign cost)는 최초에 원가로 측정되고 후속적으로 감가상각비 또는 상각비와 손상차손이 차감된 원가로 인식될 것이다.
- 이 제안사항은 해석서 채택일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기존 제거원가 자산항목은 관련된 자산의 구성요소로 재분류될 것이다.
- 의견수렴기한은 2010년 11월 30일이다.

제안사항

2010년 8월 26일, IFRIC은 DI/2020/1 '노천광산의 생산단계에서의 제거원가(*Stripping Costs in the Production Phase of a Surface Mine*)'라는 제목의 해석서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 해석서 초안은 노천광산(surface mine)의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폐석 제거원가(waste removal costs)의 회계처리에 대한 지침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기업은 노천채굴작업(surface mining operation)에서 광상(mineral ore deposits)에 접근하기 위하여 폐석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광산의 개발단계에서 제거원가는 일반적으로 광산을 건설하는 원가의 일부분으로 자본화되어 일단 생산이 개시되면 광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될 것이다. 그러나, 광체(ore body)의 특정부분에 접근하기 위하여 생산단계 동안에 폐석을 계속해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제거활동(stripping campaign)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 해석서 초안은 제거활동(stripping campaign)을 '광체의 특정부분에 접근하기 위하여 수행되며, 일상적인 폐석제거활동보다 더

Join Us!

Deloitte's IFRS Global Office will be holding a webcast on 8 September, 9:00-10:00am London time (GMT +1) to discuss important third quarter developments from the IASB including the proposals on revenue recognition and leases. For more information and to register, please click [here](#).

For more information please see the following website:

www.iasplus.com
www.deloitte.com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더욱이 해석서 초안은 제거활동은 사전에 계획되며 채굴계획의 일부분을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거활동은 명시적인 개시시점이 있으며, 제거활동과 관련된 광상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폐석제거활동을 완료하였을 때 종료될 것이다.

이 해석서 초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 제거활동이 자산의 정의에 충족하는지의 여부
- 제거활동요소의 인식시기
- 제거활동요소의 최초 인식시점 및 후속 측정방법

자산의 정의

이 해석서 초안은, 제거활동은 채굴대상 광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형태로 효익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기존 자산의 일부분으로써 인식요건을 충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기업이 채굴하는 토지를 소유하거나 토지를 채굴할 권리를 소유함으로써 제거활동으로 인한 효익을 통제한다.
- 제거활동이라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효익이 창출되었다.
- 경제적으로 미래에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광체에 대한 접근성의 향상을 통해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이다.

더욱이 이 해석서 초안은 제거활동원가는 기존 자산의 추가 또는 증설(enhancement)로 회계처리 되어야 하며, 제거활동과 관련된 기존 자산의 성격에 따라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제거활동의 일부로써 발생하지 않은 일상적인 제거원가는 IAS 2 '재고자산'에 따라 당기 제조원가로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

제거활동의 인식

제거활동이 수행되고 제거활동요소를 생성하는 원가가 발생한 경우에 제거활동요소가 인식되도록 제안하고 있다. 기업은 제거활동과 관련된 광체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폐석제거활동이 완료되었을 때, 제거활동요소 원가의 인식을 중지할 것이다.

제거활동의 측정

이 해석서 초안은, 제거활동요소는 최초에 원가로 측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원가는 제거활동을 수행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가의 누계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가의 배부액으로 구성된다. 부수적인 작업과 관련된 원가는 제거활동요소의 원가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최초인식 이후에, 제거활동요소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비 또는 상각비와 손상차손이 차감된 금액으로 인식될 것이다.

논평

제거원가에 대한 회계처리는 실무적으로 다양하여 일부 기업들은 모든 제거원가를 제조원가로 인식하는 반면 다른 기업들은 광산의 내용연수비율(life of mine ratio) 또는 다른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제거원가를 자본화하였다. 이 제안사항은 이러한 기업들에게 실무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야기할 것이며, 광산의 특정 부분에 접근하기 위하여 발생시킨 원가를 식별하도록 규정할 것이다. 기업은 접근대상 광산의 여러 부분에서 발생한 폐석제거원가를 별도로 식별하기 위하여 기존 시스템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안사항은 제거활동의 결과로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 광산의 특정부분에 대한 기대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가상각비 또는 상각비를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해석서 초안은 다른 방법이 더 적절하다고 간주되지 않는다면 생산량비례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거활동요소는 IAS 36 '자산손상'에 따라 손상검사가 수행될 것이다. 이 해석서 초안은 손상징후로써 제거활동요소와 특히 관련된 광상의 채굴 중지(또는 계획적인 중지)를 열거하고 있다.

경과규정

이 해석서 초안은 보고되는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기초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생산단계의 폐석제거원가에 대하여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이 해석서의 최초적용시점에 기존 제거원가 자산(stripping cost asset)은 제거활동이 관련된 자산의 구성요소로 재분류될 것이다. 해당 자산의 잔액은 각 제거활동요소가 관련된 광상의 특정부분에 대한 기대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되거나 상각되어야 한다. 제거요소를 직접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잔존 광상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보고되는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기초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 되어야 한다. 기존의 제거원가 부채(stripping cost liability) 잔액은 보고되는 가장 이른 비교기간 기초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논평

기업이 이 해석서의 규정을 오직 전진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제안된 경과규정에 따라 폐석제거 연수비율(life of mine strip ratio) 방법을 사용하여 인식된 제거원가 자산을 기존 자산의 일부분으로 재분류하고 관련 자산의 채굴에 따라 감가상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해석서 규정의 적용예외(grandfathering)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시행일

의견수렴기한은 2010년 11월 30일이다. 이 해석서 초안은 시행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IFRIC은 이 해석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고려한 후에 시행일을 결정할 것이다.

주요 연락처

IFRS global office

Global IFRS Leader – Clients and Markets

Joel Osnoss

ifrglobalofficeuk@deloitte.co.uk

Global IFRS Leader – Technical

Veronica Poole

ifrglobalofficeuk@deloitte.co.uk

Leader – Global IFRS Communications

Randall Sogoloff

ifrglobalofficeuk@deloitte.co.uk

IFRS centers of excellence

Asia-Pacific

Korea

이길우

kilwlee@deloitte.com (Tel: 02 6676 3980)

Hong Kong

Stephen Taylor

iasplus@deloitte.com.hk

Melbourne

Bruce Porter

iasplus@deloitte.com.au

Tokyo

Shinya Iwasaki

iasplus-tokyo@tohmatu.co.jp

Americas

New York

Robert Uhl

iasplusamericas@deloitte.com

Montreal

Robert Lefrancois

iasplus@deloitte.ca

Buenos Aires

Fermin del Valle

iasplus-LATCO@deloitte.com

Europe-Africa

Brussels

Laurent Boxus

BEIFRSBelgium@deloitte.com

Copenhagen

Jan Peter Larsen

dk_iasplus@deloitte.dk

Frankfurt

Andreas Barckow

iasplus@deloitte.de

Johannesburg

Graeme Berry

iasplus@deloitte.co.za

London

Elizabeth Chrispin

iasplus@deloitte.co.uk

Madrid

Cleber Custodio

iasplus@deloitte.es

Moscow

Michael Raikhman

iasplus@deloitte.ru

Paris

Laurence Rivat

iasplus@deloitte.fr

Rotterdam

Ralph ter Hoeven

iasplus@deloitte.nl